



법령/자료

법령정보

제개정고시등

제개정고시등

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

고시번호	제2019-1호	분야	분류	등록일	2019-01-09	조회수	6135
------	----------	----	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-1호

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 이유

최종식품에 잔류하지 않거나 섭취 가능성이 낮은 가공보조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품목의 신규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 범위를 완화하고 가공보조제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함
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을 신설하고, *Blakeslea trispora*에 의해 제조되는 β-카로틴을 신규지정하기 위하여 정의 신설 및 “α-아밀라아제”의 정의에 제조균주를 추가하고자 함
또한, 고결방지제 용도로 사용되는 “규산마그네슘”에 한하여 건조감량 기준을 적용하는 등 8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선하며,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제조현장의 사용 필요성을 반영하여 “프로필렌글리콜” 등 9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개선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가. 가공보조제 등의 안전성 제출자료 개선

- 1) 최종제품에 잔류하지 않거나 섭취 가능성이 낮은 가공보조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규 신청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 범위 개선 필요
- 2) 가공보조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, 신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 범위 완화(Ⅰ. 2. 1) 및 [별표 1] 제5. 6. 가. 2))
- 3) 향료의 신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 범위 완화([별표 1] 제5. 6. 가. 2))
- 4) 안전성 제출자료 범위의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민원 이해 제고

나.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

- 1)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필요
- 2)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마련(Ⅰ. 3. 5))
- 3)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

다. 면류첨가알카리제의 제조기준 삭제

- 1) 혼합제제 제조기준 내용이 면류첨가알카리제의 정의와 일부 중복
- 2) 제조기준 중 면류첨가알카리제에 대한 규정 삭제(Ⅱ. 1. 2) (5))
- 3) 중복되는 내용의 삭제로 민원 이해 제고

라. “α-아밀라아제” 등 2품목의 정의 개정

- 1) 식품첨가물의 다양한 제조방법 적용을 위한 정의 개정 필요



법령/자료

법령정보

제개정고시등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-1호

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

2019. 1. 9.



법령/자료	법령정보				제개정고시등
	(0건)	(0건)	(0건)	(0건)	(0건)

[이전글](#)



[다음글](#)

[개인정보처리방침](#) [저작권정책](#) [부서별전화번호](#) [RSS 이용안내](#)

[산하기관홈페이지](#)

[이동](#)

종합상담센터 : 1577-1255

우)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

Copyright© B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. All rights reserved

